


| | | | |
|-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보건복지부 | | 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 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 margin: 0;">7월 1일(수) 조간 (6. 30. 12시 이후 보도)</p> | |
| | | 배 포 일 | 2020. 6. 30. / (총 6매) |
| 과 장 | 이 중 규 | 전 화 | 044-202-2730 |
| 담당자 | 주 철 | | 044-202-2731 |

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

-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-
-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지난 3월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및 「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고시)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 1일(수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,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(Fitting)*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적합관리 :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 · 관리 서비스

○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,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·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.

○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용자 · 공급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하였으며, 제도개선안은 7월부터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.

□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

- 보청기 제조·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(급여평가)받은 후,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- 제조·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.
- ☞ (기존)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 → (변경)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가능

② 급여비용 분리지급

-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(제품 구입에 따른 급여)와 적합관리 급여(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)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.

| 총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31만 원 단일금액 지급 |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: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: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: 20만 원 * 초기 적합관리 급여(20만 원)는 검수확인(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)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(91만 원)와 같이 지급되며, 후기 적합관리 급여(20만 원)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|

-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.

☞ (기존)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%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,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→ (변경) 구매 당시 제품 비용 (91만 원)과 초기적합관리 비용(20만 원)의 10%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, 공단도 111만 원을 지급,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(본인 부담 5,000원) 지급

□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·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, 제도 개선 후에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, ②이비인후과 전문의,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,

-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②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.

○ 등록기준 신설을 통하여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,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, 시설·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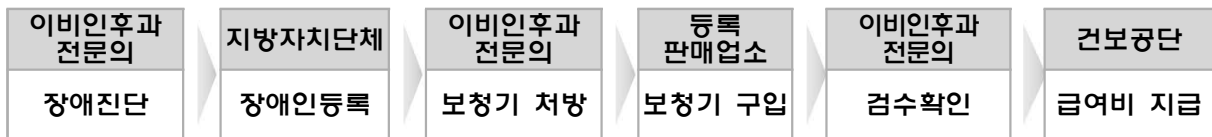
□ 보건복지부 이종규 보험급여과장은 “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,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< 붙임 >
1. 보청기 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
 2.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안
 3. 제도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

붙임 1 보청기 급여제도 개요 및 현황

□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요

- (연혁) '97년부터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 및 부상·질병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(보청기)에 대한 보험급여 시행
* 시행근거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1조(장애인에 대한 특례)
- (대상자)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
- (지원금액) 기준금액(131만원) 및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(차상위계층의 경우 100%) 지원
- (급여절차)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고,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확인('19년 1월 시행)을 거쳐 급여 지급



□ 장애인보조기기 및 보청기 급여현황

2019.12. 기준 (단위: 천건, 억원)

| 구분 | 2014 | | 2015 | | 2016 | | 2017 | | 2018 | | 2019 | |
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
|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 건수 | 금액 |
| 전체 | 74 | 342 | 83 | 463 | 132 | 1,101 | 129 | 1,065 | 138 | 1,192 | 132 | 1,105 |
| 보청기 | 15 | 42 | 21 | 126 | 58 | 671 | 55 | 645 | 65 | 767 | 57 | 673 |

* 2019년 기준, 보청기 급여액은 전체 보조기기의 60.9% 차지

** '19년 보청기 급여는 검수확인 절차 신설('19.1)에 따라 11개월분의 통계 산출

***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붙임 2

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안

< 보청기 판매업소 인력기준안 >

- 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 근무할 것
 1.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(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,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)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
 2. 보청기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수한 보청기적합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1명 이상
- * 기존 판매업소의 사업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'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유예

< 보청기 판매업소 시설·장비 기준안 >

- ◇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
 1. 방음부스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춘 청력검사실
 - 가. 청력검사기
 - 나. 이경 및 귓본채취 장비
 - 다. 음장스피커
 2.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
 3. 점검실(수리업 신고 업소의 경우)
- * 설비구축에 따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'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유예

< 보청기 판매업소 준수 의무 >

- ◇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
- ◇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(이하 이 표에서 “수급자”라 한다)에게 판매하는 경우,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을 판매할 것
- ◇ 수급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구매 계약서를 작성할 것. 이 경우, 공단 이사장이 정한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
- ◇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청력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청기의 적절한 관리와 적합관리 제공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
- ◇ 수급자에게 적합관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작성·보관할 것
- ◇ 적합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합관리 확인서 및 적합관리 관련 기록을 폐기할 것
- ◇ 판매하는 보청기의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고, 보청기 사용방법 및 전반적인 기기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자가 보청기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
- ◇ 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외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거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,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할 것

붙임 3

제도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

처방전 발급
(이비인후과 전문의)



보청기 구입
(등록 판매업소: 보청기센터, 이비인후과 등)



보청기 초기적합관리
(등록 판매업소)
* 보청기 구매 후 1년간



검수확인
(이비인후과 전문의)
* 보청기 구매 1개월 이후
(19년 1월 시행)



급여청구·지급
(수급자/건보공단)



보청기 후기적합관리
(등록 판매업소)
* 보청기 구매 1년 이후~5년

| 기 존 | 개선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판매업소 등록 가능 |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+ 인력 및 시설·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판매업소 등록 가능 |
| 제품별 적정가격을 알 수 없어 급여 투명성 저하 | 제품별 급여평가 및 가격고시를 통해 수급자 알 권리 충족 및 급여 투명성 제고 |

| 기 존 | 개선 후 |
|---|--|
| 업소의 적합관리 미제공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수급자 피해 발생 및 급여의 실효성 저하 |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급자 만족도 및 급여의 실효성 제고 |

| 기 존 | 개선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급여비 일시지급으로 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미제공 가능성 상존 | 적합관리 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적합관리 이행 담보 |